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8
----------	-----

제출년월일	1997. 6.
제출자	안산시장

1. 개정이유

-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어 일부관련 규정이 농지법 제22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흡수되어 통합제정됨에 따라
- 동 조례는 '94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하여 '95년 개정을 하였으나 분동과 행정구역이 추가로 개편 및 기존농촌동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농지가 편입되어 소멸됨에 따라 현재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의원의 정수 및 임차료 상한을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재개정하여 효율적인 임대차 및 농지관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2. 주요 골자

- 지금까지는
 - 현재 농지관리위원회의 정수 및 임차료 상한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것을
- 앞으로는
 - 분동과 행정구역이 추가로 개편되고 기존 농촌동의 택지개발로 농지가 소멸되어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안 제5조) 및 임차료 상한(안 제12조)을 현실에 맞게 재개정하려는 것임.

3. 기타참고사항

- 관련법령
 - 농지법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소요예산
 - 예산사항 : 1,200천원(국비 : 600천원, 시비 : 600천원)
- 관련사업계획 : 해당 없음
- 참고사항 : 농지관리위원회의 정수를 현행 32명(시장1, 농민대표28, 유관기관3)을 개정 27명(시장1, 농민대표22, 유관기관4)으로 조정하고자 함.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2. 농지 및 농지의 소유 ·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동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5.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6.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7. 기타 농지와 농지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정수)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1”를 “별지1”과 같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 추천 및 위촉) ① 각 등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등장이 포함된 동을 대표하는 단체회의를 소집하여 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농업인중 농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영 제66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후 위촉하여야 한다.

단, 등장이 추천한 자 중 영 제66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자를 다시 추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장이 추천한 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업무 수행)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 제1항중 “위원장은 영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위원장은 법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2조 “법 제6조제1항 및 영제4조의”를 “법 제25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로 “별표2”를 “별지2”와 같이 한다.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 조 . 문 . 대 . 비 . 표

한 명	개 정(안)
<p><u>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및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차로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u> <u>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임차료의 감면 기타 임대차에 편하여 임대차의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u> <u>3.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건의</u> <u>4.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지역안의 농지거래 상황의 확인</u> <u>5.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 농지(위로, 종교 단체의 소유 농지) 여부의 확인</u> <u>6.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4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 확인과 등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 제세 및 세제 여부의 확인</u> <u>7.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농지의 매매 및 구입 자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 농지의 임대차 사업과 관련된 업무 및 공사의 농가 경영 규모 적정화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u> <u>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u> <u>9.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u> 	<p><u>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한다) ·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 임차로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u> <u>2. 농지 및 농지의 소유 · 임대차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건의</u> <u>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u> <u>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u> <u>5.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사항</u> <u>6.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u> <u>7.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u> <u>8.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u>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 (위원회의 정수) 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 (위원회의 정수) --- ‘별표1’을 ‘별지1’과 같다.				
(별표1) 농 지 관 리 위 원 정 수					(별지1) 농 지 관 리 위 원 정 수				
구 분	개	시 장	농민대표위원	농업관련기관추천위원	구 분	개	시 장	농민대표위원	농업관련기관 추천 위원
계	32	1	28	3	계	27	1	22	4
본오1동	1		1		본오1동	2		2	
월곡동	1		1		월곡동(신설)	1		1	
고잔1동	1		1		고잔1동		삭		제
원곡본동	1		1		원곡본동	2		2	
선부2동	1		1		초지동		삭		제
초지동	1		1		선부2동	1		1	
반월동	1		1		선부3동(신설)	1		1	
대부동	20		20		반월동	2		2	
안산동	1		1		대부동	10		10	
시	1	1			안산동	2		2	
유관기관	3			3	시	1	1		
					유관기관	4			4

신 . 구 . 조 . 문 . 대 . 비 . 표

현 행	개 정(안)
제6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제6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p>① 각 등장은 시장으로부터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등장이 포함된 등을 대표하는 단체회의를 소집하여 법 제47조제2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갖춘 농민중에서 농지 및 농지 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서 추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경농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 각 등장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추천서를 기재한 사항을 검토한 후 등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농지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p>	<p>① 각 등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등장이 포함된 등을 대표하는 단체회의를 소집하여 법 제47조제2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갖춘 농업인중 농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를 선정 후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등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영 제66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위촉하여야 한다. 단, 등장이 추천한 자 중 영 제66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자를 다시 추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등장이 추천한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위촉장을 교부한다.</p>
제8조 (위원회의 업무 수행 결과 보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매매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업무 수행)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탁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 (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영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1조 (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 ----- ----- ----- ----- ② -----.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정(안)									
제12조 (임차로 상한)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로 상한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 (임차로 상한) 법 제25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로 상한은 별표2를 별지2와 같이 한다.									
(별표2)										농 지 임 차 르 상 한									
구 분	일반경작물		시설원예작물		다년성농작물						다년성농작물								
	답	전	답	전	과수	묘목	인삼	약초	기타	답	전	과수	묘목	인삼	약초	기타			
본오1등	190 35	190 35	500	500	40					190 35	190 35	500	500	40				40	
월피등	190 35	190 35	500	500	40					190 35	190 35	500	500	40				40	
고간1등	190 35	190 35	500	500	40					190 35	190 35	500	500	40				40	
원곡본등	190 35	190 35	500	500	40					190 35	190 35	500	500	40				40	
초지등	190 35	190 35	500	500	40					190 35	190 35	500	500	40				40	
선부2등	190 35	190 35	500	500	40					190 35	190 35	500	500	40				40	
반월등	190 35	190 35	500	500	40					190 35	190 35	500	500	40				40	
대부등	190 35	190 35	500	500	40					190 35	190 35	500	500	40				40	
안산등	190 35	190 35	500	500	40					190 35	190 35	500	500	40				40	

주 : 임차로 상한은 정액법(원/m²)과 정율법(%)으로 기재 하되 첫칸은 정액법 아래칸은 정율법(%)으로 기재 한다

주 : 임차로 상한은 정액법(원/m²)과 정율법(%)으로 기재 하되 첫칸은 정액법 아래칸은 정율법(%)으로 기재 한다

관계법령 (법 제46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p> <p>(1) 농지 및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구·읍· 또는 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2) 농림부장관은 지역의 특성과 농지분야의 실태를 창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인접한 2 이상의 시·구·읍·면 또는 면에 하나의 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p>	<p>제62조 (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p> <p>① 농림부 장관은 법 제4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창작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광활 구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p>	

□. 관계법령 (법 제47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할 시·구·읍·면장 2. 관할시장(특별시장 및 직할시장포함) 또는 군수가 위원회 관할구역인 시·군·읍 또는 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5인이상 30인 이하의 자 3. 관할 시·구·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촌지도소·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인 ③ 위원장은 시·구·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4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 농지의 면적이 많은 시·구·읍·면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제4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 의결로 본다.	제63조 (위원의 임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정수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위원회가 관할하는 리·동의 수를 참작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농수산통계사무소 출장소 2.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3. 농지개량조합·그 지소 및 출장소 제64조(위원의 임기)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49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 기간)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65조(위원의 선임)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리·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6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가 선임한다.		

□. 관계법령(법47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⑤ 위원의 임기 · 선임 · 해임과 위원회 조직 ·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위원의 해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7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임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 · 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법 제47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6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관계법령(법47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p>	

□. 관계법령(법48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4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찰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 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2. 제16조 규정에 의한 농지 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에 관한 자문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 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5.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9조 (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48조제5호에서 "기 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 다. 1.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 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2.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3.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기 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② 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 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기소 및 시·구·읍·면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서류의 열람·복사·기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